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07,000,000	33,210,000
일반회계	1,006,027,000	30,180,810
특별회계	100,973,000	3,029,190
공기업특별회계	82,100,000	2,463,000
수도사업특별회계	48,100,000	1,443,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000,000	1,020,000
기타특별회계	18,873,000	566,190
수질개선특별회계	6,500,000	195,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90,000	98,7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300,000	9,000
치수사업특별회계	426,000	12,780
주차장특별회계	7,945,000	238,35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2,000	12,36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755,288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9,000,000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148,589천원
- (3) 내부유보금 9,626,699천원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4,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부서간 예산을 이체할 경우에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